

—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본 매입대상 토지는 2001년부터 시행중인 신평1동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 개인사유지로서 주민쉼터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로 활용코자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매입코자 하며,
- 대지의 위치·규모·형태로 보아 주민휴식공간 조성지로서 활용가치가 높ی 평가되는 등 사업목적에 부합한 재산으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 해결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쉼터조성을 위해 매입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- 토 지 : 1필지 $831m^2$
- 건 물 : 5동 $208.56m^2$
※ 보상후 멸실조치
- 예정가격 : 380,013천원(감정가격 기준)

【처분재산】

- 건 물 : 5동 $208.56m^2$ (지상 1층)

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5조
- 지방재정법 제77조, 같은법 시행령 제84조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

5. 검토의견

-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유지를 취득, 처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임.
- 따라서, 토지 1필지와 건물 5동을 매입하고, 건물 5동은 보상후 처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